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(중로1-연호1호선)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-413호(2026.7.30.)로 변경 고시된 「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」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토지보상법")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(관계인 포함)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사업의 종류 및 명칭	사업시행자	사업 위치 및 면적	사업기간
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밖 도로 (중로1-연호1호선)	한국토지주택공사	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, 연호동 일원 10,995㎡	지구계획 승인일 ~ 2028.06.30

※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

토지	**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**	187*, 188, 산113*
	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	299*, 601*, 산39*, 산43*
	* 해당 지번은 구분지상권 설정(사용할 토지)이 포함된 지번으로 해당 면적 만큼 지상권 설정 등기 후 보상 예정	
물건	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	

비고	○ 향후 지적측량(분할 등), 변경고시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구계 및 편입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보상면적, 대상, 세부내역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○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. (소유자 인적사항 제외) - http://lh.or.kr → 사업소개-도시조성사업-손실보상-보상공고 ○ 토지·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,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
3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: 2026.10.30.(금) ~ 2026.11.13.(금) 10:00~17:00

나.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-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(☎ 053-603-2643)
  [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, 8층]
-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간정책과 (☎ 053-666-2974)
  [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, 4층]

※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(12:00~13:00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.

다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
○ 열람방법 :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
○ 이의신청 방법 : LH 열람장소 우편 제출 또는 직접 제출

※ LH 열람장소 주소지(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, 8층)로 제출
이의신청 양식은 LH홈페이지(http://lh.or.kr → 사업소개-도시조성사업-손실보상-보상공고)에서 출력 가능

4. 보상시기 : 2027.1월 예정(추후 개별통보)

※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가. 보상액 산정방법

○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
○ 다만,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.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.

나. 보상금 지급방법

구 분	내 용
현 지 인	•토지보상금은 **전액 현금보상** (단,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)
부재부동산 소 유 자	•토지보상금 중 1억원 이하 및 양도소득세 납부예정금액 현금보상 •토지보상금 중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채권보상 시행
공 통 사 항	•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**전액 현금보상**

※ 채권의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(2026.12.) 안내 예정입니다.
※ 채권보상 시 양도소득세 납부예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계산내역을 제출 해야합니다.

다.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(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)

○ 사업인정고시일(2024.11.08.) 1년 전부터 해당토지의 동일 시,구,읍,면 또는 연접 시,구,읍,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해당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(요양, 입영, 공무,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)이 소유한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.

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】
-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(2024.11.08.)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
-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
-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

라. 보상 절차

○ 보상계획 공고·열람 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⇨ 손실보상 협의 ⇨ 수용재결(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) ⇨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
○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6. 그 밖의 사항

가.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수성구청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(2026.11.13.)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

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.

나.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,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**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**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**증명하는 서류를 첨부**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(2026.11.13.)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,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국·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.

다.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
라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보상담당 (053-603-2643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주소나 거소불명,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마.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.

바. 개인별 보상액, 협의기간,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,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[☎ 053-603-2643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